

# 기초학문연구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기초학문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기초학문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정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있는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사업)** 본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학술조사 및 연구
2. 연구 발표 및 강연회 개최
3. 정기 간행물 및 전문도서의 간행
4.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외부기관 위촉사업
6. 기타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 (구성)** 본 연구소에는 기초학문 연구부, 교양도서개발 연구부 및 사회교육 연구부를 둔다.

**제5조 (연구원)**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② 본 연구소에는 연구목적과 사업성격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 객원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본 연구소에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 (소장)**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소장은 조교수이상의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한다.

③ 소장 유고시에는 본 연구소 연구원 중 선임연구원이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 (운영위원)** ① 본 연구소에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소장, 간사와 3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

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8조 (감사)** ①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회계감사를 관장한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 (간사)** ① 본 연구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**제10조 (총회)** ① 총회는 연구원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소장으로 한다. 총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4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에서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, 의결한다.

**제11조 (운영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운영, 연구계획의 수립, 연구결과의 평가,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과제에 대한 결정, 제규정의 제정,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, 간사와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.

**제12조 (의결)**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 연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4 장 서 무

**제13조 (회계년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**제14조 (수입)**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 연구보조금,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타 기부 및 보조금으로 한다.

**제15조 (예산 및 결산)** 매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16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